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노동부·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이연주 간사 010-3933-4581 min@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 강제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날 짜 2026. 06. 17. (총 13 쪽)

보 도 자 료

‘쿠팡 프레시백’ 공짜노동 갑질을 거부합니다!

참여연대·택배노조·민변, 쿠팡CLS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공정위
신고 프레시백 회수 외 계약서에 없는 세척, 분해 등 추가노동
강요·계약해지

일시 장소 : 6. 17. (수) 10:00, 선릉역 4번 출구 (쿠팡CLS 본사 앞)

1. 오늘(6/17)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 참여연대는 쿠팡CLS의 프레시백 회수 노동 강제 문제를 규탄하며 쿠팡CLS와 춘천지역 택배대리점인 하하물류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쿠팡은 로켓프레시를 통해 신선식품을 배송할 때 ‘프레시백’을 사용하는데, 쿠팡CLS와 대리점, 대리점과 택배노동자 간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프레시백은 택배노동자들이 배송하고 회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쿠팡CLS와 택배대리점측은 그동안 택배노동자들에게 프레시백 회수뿐만 아니라 세척, 분해, 적재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을 강제해왔습니다. 프레시백 1개를 세척하고 분해하기까지 드는 평균 시간은 1~2분 정도입니다. 하루 평균 택배노동자가 회수하는 프레시백은 100~200개에 달하며, 회수가 밀릴 경우 300개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있으며 프레시백 해체 작업으로 하루 약 1시간 이상의 추가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프레시백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근력을 소모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팔꿈치 근육에 문제가 생긴 택배노동자가 택배노조에 제보를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2. 택배노조에 따르면 쿠팡CLS는 배송수수료에 프레시백 회수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배송수수료와 별도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서에는 배송수수료에 프레시백 회수 반납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명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쿠팡CLS가 프레시백 회수시 건당 100~2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쿠팡 계약서에 따르면 이는

‘인센티브’일 뿐, 실제 수수료로 지급되는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합니다. 쿠팡CLS와 택배대리점간 수수료 단가는 택배기사에게 비공개이기 때문에 결국 택배노동자들은 프레스백 회수 업무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택배 노동자들에게 프레스백 회수 외 추가노동을 강제하는 것은 배달기사에게 그릇 설거지를 시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3. 이에 올 2026년 3월, 춘천 지역에서 로켓프레시 서비스가 신규로 도입되면서 춘천지역의 쿠팡CLS 대리점인 하하물류센터의 택배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프레스백 회수 외 노동을 거부했습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2026년 1월, 이미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한 이후에 로켓프레시 서비스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프레스백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쿠팡CLS와 하하물류센터는 프레스백 회수 외 노동을 강요하고, 이를 택배노동자들이 거부하자 해당 택배노동자 8명에게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공지하고 실제 김상원 택배기사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김상원 택배기사는 “조합원들이 프레스백 외 세척, 분해 작업을 거부하자 하하물류는 시간당 2만원의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 비용을 우리의 월급으로 지불하고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김상원 기사는 “일반 배송 상품, 반품 회수 상품 모두 동일한 단가를 지불하면서 유독 프레스백 회수 업무에는 수수료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4. 이번 공정위 신고서를 작성한 김단영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강제적인 계약 외 업무부과”라며 “계약서에 없는 일을 충분한 대가도 없이 강요하고, 거부하면 보복한 행위에 대한 신고”라고 발언했습니다. 김단영 실행위원은 “이러한 쿠팡CLS와 하하물류의 계약 외 업무 강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또한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쿠팡CLS와 하하물류가 계약 외 노동을 거부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실제 한 조합원에 대해 계약해지를 이행한 점에 대해 “이 모든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엄중한 공정위의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계약이 해지된 노동자의 경우 이후 하하물류 측이 생활물류법상 계약해지 절차를 지키지 않아 다시 현장에 복귀했지만 계약해지 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도 없었고, 이후에도 다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나가는 중입니다.
5.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쿠팡 프레스백 회수 외 업무 강요는 춘천지역뿐만 아니라, 로켓프레시 서비스가 시행되는 모든 지역의 택배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셈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조일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프레스백 회수 외 업무

강요는 택배대리점의 업무지시가 아니라 쿠팡CLS가 조직적으로 지시한다는 점에서 쿠팡CLS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택배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전국의 택배노동자들이 쿠팡이 계약 외 업무 강요와 같은 택배노동자 착취나 과로사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쿠팡이 온전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공정위의 엄중한 제재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끝.

-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 붙임2 : 신고서 개요
- ▣ 붙임3 : 발언문
- ▣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쿠팡 프레시백 회수 외 노동 강제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06.17(수) 오전 10시, 쿠팡CLS 본사 앞 (선릉역 4번 출구)
 - 공동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 발언 순서
 - 사회 :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선임간사
 - 발언1. 쿠팡CLS 프레시백 공짜노동 문제점 :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본부장
 - 발언2. 노조 탄압하는 하하물류 규탄 : 김상원 택배노조 강원지부 쿠팡 춘천지회 하하물류 분회장
 - 발언3. 공정위 신고 개요 : 김단영 참여연대 실행위원
 - 발언4. 쿠팡CLS의 업무지시 및 책임성 : 조일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퍼포먼스

1. 신고인 개요

- 신고인
 - 전국택배노동조합
 - 참여연대
- 피신고인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
 - 주식회사 하하물류

2. 위반행위와 적용법리

1) 행위 1.

- 춘천 지역 로켓프레시 서비스 도입과 계약 외 업무의 일방적 부과
 - 피신고인 쿠팡CLS는 2026. 3. 18. 춘천 지역에 로켓프레시 서비스를 신규 도입함. 이에 따라 위 지역의 신고인 산하 조합원들에게 프레시백 회수 업무가 새로이 부과되었는데, 피신고인 하하물류는 위 일자부터 신고인 산하 조합원들에게 다음 세 가지 업무를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함.
 - (가) 프레시백 해체 업무 : 세척의 편의를 위하여 프레시백을 반듯하게 펴는 작업
 - (나) 프레시백 정리 업무 : 프레시백 내부의 아이스팩 및 이물질 제거하는 작업
 - (다) 프레시백 적재 업무 : 해체 및 정리된 프레시백을 쌓아두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위와 같은 업무들(프레시백 해체, 정리, 적재 업무)은 피신고인 쿠팡CLS가 자신의 영업점들과 체결한 영업점 위수탁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음. 그런데 피신고인 하하물류와 신고인 산하 조합원 간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서 부속합의서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수탁자(배달기사, 신고인 산하 조합원)는 위탁자(하하물류)의 운영방침(공지사항 및 규정, 지침, 업무스케줄 등) 및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의 운영방침(공지사항 및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피신고인 하하물류는 신고인에 대한 위 업무 부과의 근거로 위 규정에 따른 피신고인 쿠팡CLS의 운영방침 및 지침을 들고 있음. 따라서 본 행위는 피신고인 하하물류가 단독으로 한 행위라기보다는, 피신고인 쿠팡CLS가 자신의 운영방침을 통하여 사실상 지시하고 피신고인 하하물류가 이를 신고인 산하 조합원들에게 이행한 행위로 봐야 함.
- 적용 법리

-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함
- 제1항 제6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6호 라목.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함
- 또한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함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V. 6. 라. (1) (가).**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
- 동 지침 **V. 6. 라. (3) (다).** “계약 유효기간 중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한 행위”
- 동항 (마).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율,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IV. 4. 다. (2) (나).** “사업자가 계약으로 정한 대가를 변경하지 않고 용역의 사양을 변경하거나 계약 외의 용역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 동 지침 **IV. 2. 다. (4).** “계약내용 외의 업무 강요행위: 사업자가 계약내용 외의 업무를 노무제공자에게 강요하는 행위”

2) 행위2.

- 신고인 산하 조합원들의 이행 거부와 피신고인 하하물류의 압박 행위
- 신고인 산하 조합원들은 추가로 부여된 업무가 자신들이 체결한 계약서에서 정한 업무 범위 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부여된 업무를 거부하고 **2026. 3. 22.**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기존 업무인“수거 후 반납 업무”만을 이행함. 이에 대하여 피신고인 하하물류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압박 행위를 시작함.
- (1) 먼저 **2026. 3. 24.** 피신고인 하하물류는 자신의 영업점 업무 단체방을 통하여 “프레시백 해체·정리·적재 업무가 계약상 업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신고인 산하 조합원들에게 위 업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지를 발송함.
- (2) 또한 **2026. 3. 26.** 같은 단체방을 통하여 ① 위 업무 미이행 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위협을 공지한 다음, 이어서 ②“노조 내부에서 계약서를 공유하는 것은 비밀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지를 연속하여 발송함.
- (3) **2026. 3. 29.**경 피신고인 하하물류는 매일 아침 위 단체방에, ① 추가로 부과된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신고인 산하 조합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② 미이행 조합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고용한 알바 인력의 대체 인력비 명목으로 1일 4만 원을 약정 수수료에서 공제할 것임을 예고하는 공지를 발송함.

- 피신고인 하하물류는 2026. 4. 8. 신고인 산하 쿠팡춘천지회 하하물류분회 분회장에게, 그 다음 날인 2026. 4. 9.자로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계약해지 통보를 발송함.
- 나아가 피신고인 하하물류는 분회장 김상원에 대한 계약해지에 이어, 2026. 4. 14. 신고인 산하 쿠팡춘천지회 하하물류분회 소속의 다른 조합원 8명에게도 계약해지 예고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함.
- 적용 법리
 - 위협적인공지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V. 6. 라. (1) (나). 거래과정에서의 불이익 제공행위를 “거래조건을 불이행함은 물론 거래관계에 있어 사실행위를 강요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해당
 - 비용공제예고행위
 -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IV. 2. 다. (3). “부당한 비용 징수행위: 사업자가 노무제공자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수수료와 별도로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해당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V. 6. 라. (3) (마).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율,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해당
 - 보복적 계약 해지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11조 제1항.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종사자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V. 6. (4) (다).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당해 행위를 한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택배기사 위·수탁 계약서 제11조 제3항 “위탁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내용과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IV. 4. 다. (3) (차).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3) 행위3.

- 신규 부속합의서에 프레시백 회수 업무를 추가하려는 시도
- 피신고인 하하물류는 프레시백 해체, 정리, 적재 업무의 일방적 부과에 대한 신고인의 반발에 직면하자, 2026. 6. 3.자로 시행될 예정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2조가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였다고 주장하며 허위로 공지하고, 신규 부속합의서에 프레시백 해체 등 회수업무를 구체화한 계약서를 발송함. 그 과정에서 피신고인 하하물류가 관련 종사자들에게 프레시백 반납절차를 명시한 안내문을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공지하였는데, 그 안내문의 작성자는 피신고인 쿠팡CLS로 추정되는 상황.
- 적용 법리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함.
- 피신고인 하하물류가 신규 부속합의서를 제시하면서, 그 부속합의서의 위탁업무 범위에 “회수”의 내용을 새로 추가한 행위는 단순한 업무 내용의 정비나 경미한 변경이 아니며, 당초 계약에 근거가 없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및 그에 대한 불이익 부과가 문제되자, 사후적으로 해당 업무를 계약상 위탁업무 범위에 편입시켜 외형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로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조건 변경 내지 불이익 제공에 해당함.

▣ 붙임3 : 발언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장 강민욱입니다.

쿠팡 프레시백은 쿠팡 택배현장의 불공정한 행태 중 가장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프레시백은 신선제품을 담은 다회용기입니다. 택배노동자들은 쿠팡 프레시백을 하루 100개에서 200개 정도 수거합니다. 이 수거에만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리고 수거한 프레시백을 캠프에 반납하는데, 이 또한 1시간 가량 걸립니다. 수거한 그대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프레시백을 해체하고 청소하고 펼쳐서 롤테이너에 적재한 후 롤테이너를 쿠팡이 원하는 곳에 가져다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프레시백 업무는 과로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프레시백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가가 없는 노동입니다. 영업점들은 쿠팡CLS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저와 같은 택배노동자들은 영업점과 위수탁계약을 맺습니다. 당연히 위탁 받은 업무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프레시백의 대가는 없습니다. 쿠팡CLS와 영업점간의 위수탁계약서를 보면 그 어디에도 프레시백 회수 반납에 대한 별도 수수료 항목이 없습니다. 계약에서의 수수료 내용은 배송과 반품에 대해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프레시백 회수반납은 위탁 배송업무에 포함되어 있을 뿐 이에 상응하는 별도 수수료 조항이 없습니다. 건당 100원의 인센티브만을 지급하고 있을 뿐인데 말 그대로 인센티브이지 일의 대가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프레시백의 대가는 불투명한데 반해 프레시백 미회수에 대한 제재는 계약상 명확히 집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쿠팡CLS는 2024년까지 상시적 구역박탈 제도인 클렌징 제도에 프레시백 회수율 기준을 95%로 정하고 이를 달성 못하면 배송구역을 언제든 회수해갔습니다. 2025년부터는 프레시백 업무를 SLA 기준 중 하나로 넣고 가장 큰 배점을 부여했습니다. 역시 클렌징과 마찬가지로 SLA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구역을 박탈당하거나 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쿠팡CLS와 영업점과의 위수탁계약서나 하하물류영업점과 택배노동자 간의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 프레시백의 업무에 대해서 회수와 익일 반납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쿠팡CLS와 전국의 모든 영업점들은 택배노동자들에게 단순 반납이 아닌 회수된 프레시백을 해체하고 청소하고 펼쳐서 롤테이너에 적재해서 그 롤테이너를 원하는 장소에까지 가져다둘 것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프레시백을 그대로 반납하는 것이 계약서상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쿠팡과 대리점은 프레시백의 반납절차를 추가하여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택배노동자들에게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합의된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에 따르면 택배노동자의 업무는 집화와 배송입니다. 프레시백과 같은 대화용기를 수거하는 것은 명백히 택배노동자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쿠팡은 이 사회적 합의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프레시백으로 많은 국민들이 쿠팡을 좋은 기업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쿠팡의 프레시백은 착취노동의 산물이자 불공정 갑질행위의 대표적인 케이스이며, 쿠팡의 반사회적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변호사 분들과 참여연대 활동가 분들께서 소중한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택배노조는 이러한 힘들을 모아 쿠팡택배현장에 만연한 갑질과 불공정행위를 바로 잡아 갈 것이며, 프레시백 업무에 대한 문제부터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프레시백의 현실을 똑똑히 확인하고 제대로 된 행정조치를 내려 택배현장에 이로 인한 피해와 부당이익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원 하하물류 분회장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하하물류의 부당한 갑질과 노동 착취에 맞서 이 자리에 선 배송기사 김상원입니다.

지난 3월 18일, 춘천 지역에 야간배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쿠팡의 일방적인 야간배송 도입으로 인해, 그동안 현장을 지켜온 주간 기사들의 물량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수입은 반쪽이 되었고, 우리 가족의 생존권은 버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쿠팡은 노동자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에는 일절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량은 줄었지만, 고통은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에게 '프레쉬백 회수'라는 추가 업무가 생겼습니다. 기존 계약서에는 '프레쉬백을 회수하여 반납한다'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회수된 백을 일일이 짹짹 뜯어 해체하고, 세척하고, 적재하라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프레쉬백을 회수하여 반납했습니다. 그러나 하하물류는 계약서에도 없는 '해체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유로, 지난 4월 8일 저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지만 법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위법적인 계약해지에 맞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사측은 자신들의 행위가 명백한 위법임을 인정하고 나서야 지난 4월 26일 저를 마지못해 복귀시켰습니다.

사측의 졸렬한 보복과 착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조합원들이 계약 외 노동인 해체 작업을 거부하자, 하하물류는 시간당 2만 원이라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아르바이트 비용을 저와 조합원 기사들의 수수료에서 불법적으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비용을 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어 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배송 상품과 반품 회수 상품은 배송과 동일한 단가를 지급하면서, 유독 프레쉬백 회수 업무는 수수료가 없으며 단지 건당 단돈 100원의 인센티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노동 착취이며, 배송기사들을 인간이 아닌 값싼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처사입니다.

이제 하하물류는 한술 더 떠, 국토교통부에서 의무화한 '표준계약서 작성'을 빌미로 우리에게 악법적인 새로운 계약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지침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쓰는 척하면서, 그 뒤에 숨긴 '부속합의서'를 통해 현장 기사들과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기존 계약을 강제 해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부속합의서 안에 우리가 그토록 거부했던 '프레쉬백 해체 업무'를 강제로 추가하여, 합법의 탈을 쓴 불합리한 노예계약을 완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표준계약서 취지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사측의 독소조항을 합법화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하물류는 정부의 지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줄어든 수입에 피눈물을 흘리고, 부당한 공제에 가슴을 치면서도, 우리는 오늘 불법과 편법에 당당히 맞서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하물류는 지금 당장 계약해지를 빌미로 노동 착취와 위법한 공제를 중단하고, 현장 노동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십시오.

무엇보다 이렇게 부당하고 불공정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전국의 쿠팡 택배노동자들이 이러한 업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공정위에 요구합니다. 쿠팡의 프레시백 불공정 행위를 해결해주십시오. 쿠팡CLS는 지금이라도 회사가 직접 프레시백 업무를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저 김상원과 조합원들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서 이 부당한 갑질의 실태를 널리 알려주시고, 저희의 정당한 투쟁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단영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오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와 그 영업점인 주식회사 하하물류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바로 “강제적인 계약 외 업무 부과”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일을, 충분한 대가도 없이 강요하고, 거부하면 보복하는 것입니다.

춘천 지역 택배기사들은 하하물류와 택배기사 위수탁 계약을 맺었고, 하하물류는 쿠팡CLS와 택배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습니다. 택배기사들의 계약서에 명시된 회수 업무는 “물건을 수거해 정해진 곳에 반납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8일, 쿠팡CLS가 춘천에 신선식품 새벽배송 서비스 ‘로켓프레시’를 도입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하물류는 기사들에게 사전 협의 없이 세 가지 일을 일방적으로 떠넘겼습니다. 첫째, 프레시백을 세척하기 좋게 펴는 해체 작업, 둘째, 프레시백 안의 아이스팩과 이물질 치우는 정리 작업, 셋째, 그렇게 정리한 프레시백을 쌓고 옮기는 적재 작업입니다. 모두 기사들의 계약서는 물론, 쿠팡CLS가 영업점과 맺은 계약서에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상당한 노동력이 드는 것은 물론, 이 때문에 택배기사들의 하루 업무 시간이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회사에서 제시한 대가라고는 건당 100원의 인센티브가 전부였습니다.

택배기사들이 “계약에 없는 일”이라며 거부하자, 회사는 압박으로 대응했습니다. 하하물류는 단체 대화방에 일을 하지 않은 기사들의 실명을 매일 아침 공개해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습니다. 또 거부한 기사에게는 작업을 대신할 알바생을 고용하기 위한 대체 인력비 명목의 하루 4만 원을 약정 수수료에서 공제하겠다고 예고한 후, 실행까지 하였습니다. 받기로 한 돈을 일방적으로 깎은 것입니다. 심지어 “노조에 계약서를 보여주는 것은 비밀유지 위반”이라며, 노동자들이 외부에 도움을 청할 권리마저 막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보복이 뒤따랐습니다. 4월 8일, 하하물류는 노조 분회장에게 그 다음 날부터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어 4월 14일에는 부당한 업무를 거부하고 노조 활동에 참여했던 나머지 조합원 8명에게도 같은 계약해지 예고가 날아갔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하하물류는 새 계약서에 프레시백 해체 업무를 슬그머니 끼워 넣어, 위법한 지시를 사후에 정당화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으며, 그 배후에는 쿠팡CLS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쿠팡CLS는 하하물류와의 계약서에 “회사가 정하는 업무처리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라”는 포괄적 복종 조항을 심어두고, 하하물류를 통해 업무를 사실상 지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출하는 신고서에서 자세히 밝혔듯이, 이처럼 계약에 없는 업무를 일방적으로 떠넘긴 행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제45조가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일방적인 수수료 공제와 보복적 계약해지 역시 이익제공강요이자 불이익제공행위로서, 같은 조항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입니다. 특히 계약해지의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1조가 정한 해지 절차마저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새 합의서에 프레시백 해체 업무를 끼워 넣은 시도 역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입니다. 이 모든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계약에 없는 일을 떠넘기고, 거부하면 보복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거대 플랫폼 앞에 노동자의 권리가 침탈당하는 현실을 앞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저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을 전면 조사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를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